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가합55850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선고 2022나201984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가합558502 판결

전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고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수연

3. 주식회사 C

변론 종결 2022. 4. 8.

판결 선고 2022. 5. 13.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287,629,227원 및 그중 286,313,837원에 대하여 2021. 6.

29.부터 2021. 9. 3.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3. 체결한 매매계약을 305,451,28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5,451,28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사이에 2020. 9. 3. 체결한 매매계약을 305,451,282원¹⁾을 한도로 취소한다.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451,28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피고 A의 대출

1) 원고는 2019. 6. 17. 피고 A과 위 피고가 D 주식회사(이하 'D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원고가 그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금액 117,000,000원(대출예정금액 130,000,000원의 보증비율인 90% 상당) 및 180,000,000원(대출예정금액 200,000,000원의 보증비율인 90% 상당)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본인'은 피고 A을 의미하고, '연대보증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1조(신용보증의 금액과 기한)

신용보증원금: 위 각 보증금액

신용보증기간: 2019. 6. 17.부터 2020. 6. 16.까지

종속채무: 법령 및 원고와 채권자 간의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채권자에 대해 신용보증원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액(또는 가산금액)과 비용

채권자: D은행 평촌지점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

본인은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이행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기로 합니다.

제10조(상환범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2) 피고 A은 2019. 6. 18. D은행에게 위 각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면서, D은행으로부터 123,500,000원 및 190,000,000원을 각 이율 연 4.05%, 변제기 2021. 6. 16.2) 로 정하여 대출(이하 대출금 123,500,000원의 대출약정을 '이 사건 제1대출약정', 대출금 190,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이 사건 제2대출약정', 위 각 대출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받았다.

3) 원고는 2020. 5. 25.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중 보증기한을 2020. 6. 16.에서 2021. 6. 16.로 변경하였다.

4) 이 사건과 관련한 법령은 아래와 같다('기금'은 원고를 의미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제24조(업무방법서) 기금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구상권의 행사

제34조(위약금)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업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한다.

제35조(손해금)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年率)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징수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조의2(보증료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료 및 법 제34조에 따른 위약금은 대상 업체의 신용도, 보증종류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5)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에 따른 위약금률은 기존 보증료율에 연 0.5%를 더한 값으로,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위약금률은 연 1.1%이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은 연 8%이다.

6)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에 따른 위약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주채무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않은 때에 원고가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 또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의 양자 중 후일자의 다음 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 및 주채무 이행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하여 부과된다.

나. 피고 A의 이자 연체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D은행에 2021. 2. 15.까지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관한 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이에 D은행은 2021. 4. 27. 원고에게 피고 A이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관한 이자를 연체하였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다.

3) 결국 보증인인 원고는 2021. 6. 29. D은행에게 이 사건 제1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원금 중 원고 보증금액인 111,150,000원(대출예정금액은 130,000,000원이었으나, 실제 대출금은 123,500,000원이므로, 위 실제 대출금에 보증비율인 90%를 곱한 금액) 및 이에 대한 2021. 2. 16.부터 2021. 6. 28.까지의 이자 1,640,299원의 합계인 112,790,299원을, 이 사건 제2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원금 중 원고 보증금액인 171,000,000원(대출예정금액은 200,000,000원이었으나, 실제 대출금은 190,000,000원이므로, 위 실제 대출금에 보증비율인 90%를 곱한 금액) 및 이에 대한 같은 기간의 이자 2,523,538원의 합계인 173,523,538원을 각 변제하였다.

4)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213,360원을 지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근저당권 변동

1) 피고 A은 2019. 1.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24,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2) 피고 A은 2020. 9. 3.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2020. 9.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2020. 12. 18.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피고 C은 2020. 12.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64,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A,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6, 8호증(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 청구

1) 원고가 D은행에게 피고 A의 D은행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상 대출금 채무 중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대출약정 관련 112,790,299원, 이 사건 제2대출약정 관련 173,523,538원을 각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변제한 이 사건 제1대출약정 관련 112,790,299원, 이 사건 제2대출약정 관련 173,523,538원의 합계 286,313,837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인 2021. 6. 29.부터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의 위임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인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약금 청구

1) 피고 A이 이 사건 각 대출약정상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대출금 채무의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에 따른 위약금은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 또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의 양자 중 후일자의 다음 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 및 주채무 이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0.5%를 더한 비율인 연 1.1% 상당으로 산정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인 2021. 6. 17.(이 사건 각 대출약정상 이자 연체로 인해 원래의 대출기한인 2021. 6. 17.보다 먼저 기한이 도래하였다)부터 대위 변제 전날인 2021. 6. 28.까지 12일에 대한 위약금으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상 대출원금 합계 286,313,837원에 대한 위 위약금률 연 1.1%의 비율로 계산한 102,030원(= 282,150,000원 × 0.011 × 12/365,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 이하를 버린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채권보전비용 청구

1)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구상금 등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을 피고 A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사실,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한 구상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1,213,36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채권보전비용으로 1,213,3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287,629,227원(= 구상금 286,313,837원 + 위약금 102,030원 + 채권보전비용 1,213,360원) 및 그중 구상금에 해당하는 286,313,837원에 대하여 원고의 변제일인 2021.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9. 3.까지는 위 지연손해금을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사전구상권 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상금, 위약금, 채권보전비용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이라 한다)이라는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구상금 등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시가

1,217,203,2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770,000,000원을 공제한

447,203,200원보다 소액인 피보전채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인

305,451,282원[= 286,313,837원 + 102,030원 + 1,213,360원 + (286,313,837원 × 0.08 × 284/36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주장의 요지3) 가) 원고 주장의 피보전채권인 사전구상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성립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전기요금 연체는 흔한 일이어서, 전기요금 연체만으로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A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방법이자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여 갹생을 도모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고, 직원 3명의 고용승계 등을 고려할 때 매매대금은 염가가 아니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매매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라) 구상금과 관련한 연 8%의 지연손해금률은 근거가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피보전채권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위 구상금, 위약금, 채권보전비용 명목의 합계 287,629,227원 및 그중 구상금 286,313,837원에 대한 연 8%의 지연손해금 채권인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한편 피고 B은 연 8%의 지연손해금률의 적용은 근거가 없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지연손해금률은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연 8%로 정한 것은 같은 규정에서 정한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며, 달리 지나치게 높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은 원고 주장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9. 3. 이후인 2021. 6. 29.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기재, 당진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 등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구상금 등 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①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은 모두 이 사건 각 대출약정 및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근거하여 발생한 것인데, 위 각 약정은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9. 3. 이전인 2019. 6. 17. 무렵

성립하였다. 즉,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상태였다.

②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전기요금,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지급할 만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약정상 대출금 채무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이는 곧 보증사고 발생으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21. 3. 17. 이자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이 성립하였다.

라) 이처럼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사전구상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살피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은 피고 B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 피고 A의 사업 지속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사업 진행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폐플라스틱, 고무 재생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A로서는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공장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공장 및 그 대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피고 A의 사업의 지속이 불가능해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피고 A의 사업 지속 사이에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B, C의 악의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B, 전득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 B이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을 제1에서 4호증)은 피고 B이 피고 A의 전기요금 채무를 인수하여 납부하였다거나, 피고 A이 2020년 중반 이후 자금 부족으로 대금 미지급 등이 발생하였고, 대출도 되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었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피고 B의 선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으며, 달리 피고 B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가액배상

- 1) 관련 법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E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가액배상의 범위는 305,451,282원이다.
-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9. 3. 기준 시가는 1,115,448,000원이고, 2021. 11. 30. 기준 시가는 1,217,203,200원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770,0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동담보가액은 447,203,200원(= 1,217,203,200원 - 770,000,000원)이다.
- ②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위약금, 채권보전비용 명목의 287,629,227원 및 그중 구상금 286,313,837원에 대한 2021. 6. 2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4. 8.까지 연 8%의 지연손해금 17,822,055원(= 286,313,837원 × 0.08 × 284일/365일, 원 미만 버림)의 합계 305,451,282원(= 287,629,227원 + 17,822,055원)이다.
- ③ 따라서 가액배상의 범위는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소액인 305,451,282원이다.

바. 소결

- 1)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피고로 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들의 가액배상의무는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 2)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 B와 전득자인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305,451,28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허명산

판사정신영

판사한광수

별지

- 1)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면서 '447,203,200원 한도 내에서, 287,629,227원과 그중 286,313,837원에 대하여 2021. 6. 29.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한도로 취소를 구하였으나, 2022. 4. 11.자 참고서면에서 변론종결일인 2022. 4. 8.까지의 피보전채권액을 계산하여 위와 같이 특정하였다.
- 2) 당초 변제기는 이보다 전이었으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 변경 이후 변제기도 위와 같이 2021. 6. 16.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 3)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2021. 10. 5.자 준비서면)은 2022. 3. 28.자 준비서면 제1, 2면에 비추어 볼 때,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